

# 의안검토보고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15 대전광역시장
2. 건 명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안건요지 : 별 첨
4. 검토요지 :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용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본 승인 안은 2009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는바,
- 2008년도 기금결산내용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내용

## 2. 주요내용

### □ 기금 결산현황

#### [1] 총 괄

(단위 : 백만원)

2007년말 현재액 (A)	2008년도		2008년말 현재액 (D)=(A)+(B)-(C)
	수납액(B)	지출액(C)	
21종 185,092	41,593	30,219	21종 196,466

[2] 기금별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별	2007년말 현재액 (A)	2008년도		2008년말 현재액 (D)=(A)+ (B)-(C)
		수납액(B)	지출액(C)	
계	185,092	41,593	30,219	196,466
감채적립기금	25,968	11,068	1,500	35,536
중소기업육성기금	29,466	9,818	15,257	24,027
근로복지기금	947	46	0	993
과학기술육성기금	377	119	0	496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2,591	433	85	2,939
보성장학기금	309	15	10	314
문화예술진흥기금	8,444	925	609	8,760
체육진흥기금	10,276	489	410	10,355
재해구호기금	20,433	998	0	21,431
사회복지기금	4,609	446	129	4,926
청소년육성기금	2,140	102	90	2,152
여성발전복지기금	3,895	288	144	4,039
식품진흥기금	6,828	596	596	6,828
녹지기금	6,547	1,802	655	7,694
주민지원기금	278	810	855	233
운수사업기금	6,834	409	3,114	4,129
재난관리기금	43,933	9,098	3,681	49,35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5,210	1,416	1,075	5,551
도시균형발전기금	529	2,244	1,843	930
농촌지도자육성기금	5,478	471	166	5,783
통합관리기금	185,092	27,012	55,638	156,466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개별기금 조성액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등 4개 기금 모두 549억 6,5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9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음.

### 3. 검토의견

#### ○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2008 지자체 기금운용평가에서 최우수기관표창 수상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됨.

다만, 수입부분에 있어 당해연도 적립금 415억 9,326만원 중 자치단체출연금인 52.6%인 218억 8,841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총 지출액 2,266억 8,513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160억 5,580만원으로 전체비중의 7%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상에서처럼 수입액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거나, 유사·중복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또 당초 목적에 적합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라도 기금목표액 적립이 미흡한 기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아울러 미 활용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환 또는 당초목적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는 물론 심도 있고 실현가능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원활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